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9. 17.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2년 9월 4일

나. 발 의 자 : 김길자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 2012년 9월 6일

라. 상정일자 : 제170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2012년 9월 1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김길자 의원)

가. 제안이유

1)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이 학대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노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2)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3)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6조)
5) 노인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종성)

가. 본 제정조례안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및 핵가족화,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학대 피해노인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출된 조례안임.

나.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한 “2010년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상노인 6,745명 중 전체 노인의 13.8%(931명)가 노인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2005년 학대신고는 2,038건이었으나 2010년에는 3,068건으로 2005년 대비 약 50% 이상 증가되어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위의 조사결과와 같이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본 조례안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노인 학대사례 및 대응방안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유도하고, 또한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다양한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으로, 노인의 인권증진 및 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김길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4

발의연월일 : 2012년 9월 3일
발 의 자 : 김길자의원 외 5명

1. 제안이유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이 학대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노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다.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노인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나. 합　　의 : 노인복지과, 총무과, 기획예산과

다. 기　　타

1) 입법예고(2012. 8. 27 ~ 9. 3)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